

MS Your Valuation Partner

#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평가의뢰인	청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박상규
건명	박노식 소유물건(2025타경4896)
문서번호	2025타경4896
감정평가서번호	미래새한 2509-42-25001호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 시 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全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충북지사**  
Mirae & Saehan Appraisal Co.,LTD

TEL : (043)234-4488 FAX : (043)234-4600



# 수수료 청구서

감정평가서번호 : 미래새한 2509-42-25001

2025-10-13

청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박상규 귀하

## 사십오만삼천이백원정 (₩453,200.-)

2025-09-24 귀 제 『2025타경4896』호로 의뢰하신 『박노식 소유물건(2025타경4896)』에 대한 감정평가가 완료 되었으므로 상기 금액을 감정료의 산정기준등에 관한 예규에 의거 청구하오니 정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청구 내역 ]

과 목		금 액	비 고
수 수 료		290,000	
실 비	여 비	106,000	
	토 지 조 사 비	-	물건조사비 : 1동 x 10,000원
	물 건 조 사 비	10,000	
	공 부 발 급 비	2,000	기본수수료x0.8 ≒290,000
	기 타 실 비	4,000	
	특 별 용 역 비	-	
소 계		122,000	
<b>합 계(공급가액)</b>		<b>₩412,000.-</b>	※ 1,000원 미만 절사
부 가 가 치 세(세 액)		₩41,200.-	
<b>총 계</b>		<b>₩453,200.-</b>	
기 납 부 착 수 금		-	
<b>정 산 청 구 액</b>		<b>₩453,200.-</b>	

※ 수수료 입금시 입금자 명의를 감정서번호【25094225001】(으)로 기재하여 아래 계좌로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604-85-12227]

★ 계 좌 번 호 ★

◆ 신한은행 : 100-031-954554 예금주 : (주)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충북지

(주)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충북지사장



TEL. (043)234-4488 FAX. (043)234-4600

# (구분건물)감정평가표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  
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하영호

하영호



(주)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충북지사  
대표자 이 하 양



감정평가액	일억삼천구백만원정 (₩139,000,000.-)
-------	----------------------------

의뢰인	청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박상규	감정평가 목적	경매	
채무자	-	제출처	청주지방법원 경매6계	
소유자 (대상업체명)	박노식(2025타경4896)	기준가치	시장가치	
		감정평가 조건	-	
목록 표시 근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2025-10-13	2025-09-25~ 2025-10-13	2025-10-13

감정평가내용	공부(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구분건물	1세대	구분건물	1세대	-	139,000,000	
				이하	여백	
합계					₩139,000,000.-	

심사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 합니다. 심사자 감정평가사	李夏洋	
------	------------------------------------------------------------------------------------------------	-----	--

# 구분건물 감정평가 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1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도로명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244번길 6	111-13, 111-18 위 지상 평화아파트 제1동	아파트 1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1층 2층 3층 4층 5층 지하  (내관리실 25.2㎡, 공중변소 7.68㎡, 기계실 32.4㎡					
							922.5		
							922.5		
							922.5		
							922.5		
							922.5		
							922.5		
							922.5		
							922.5		
							912.96		
1	"	111-13	대	일반상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6,078				
2	"	111-18	대	제2종일반주거지역	562				
1-1				(내) 철근콘크리트조 제2층 제209호	84.60	84.6	139,000,000	비준가액	
				1,2 소유권대지권	5,819 6,640x---- 664,000	58.19			
<b>합 계</b>							<b>₩139,000,000.-</b>		
			이	하	여	백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I 감정평가 개요

### 1. 감정평가 목적

대상물건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소재 우암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평화아파트 제1동 제2층 제209호)로서, 청주지방법원에서 의뢰된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임.

### 2. 대상물건의 기본적 사항

#### 가. 총괄 개요

[집합건축물대장 기준]

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111-13 외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244번길 6)		
건물명 및 동·층·호수	평화아파트 제1동 제2층 제209호		
용도지역	2종일주,일반상업		
주 용 도	아파트		
사용승인일자	1984-12-08		
주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규 모	층수(지하/지상)	호/가구/세대	
	-1/5	-/-/50	
면 적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	962.58	5,565.54



#### 나. 대상물건 개요

일련 번호	건물명·동명	층	호	면 적(㎡)				전용률 (%)	용도
				전유부분	공용부분	계약면적	대지사용권		
1-1	평화아파트·1	2	209	84.6	25.99	110.59	58.19	76.5	아파트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3. 기준가치

### 가. 개요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음.

### 나.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

“기준가치”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로서,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는 “시장가치”, 즉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價額)을 기준으로 하되, 감정평가 목적(경매)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 4. 의뢰인이 제시한 감정평가 조건에 대한 검토

없 음.

## 5.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기준시점”이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하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5년 10월 13일을 기준시점으로 정함.

## 6.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그 내용

실지조사는 대상물건이 있는 곳에서 대상물건의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10조(대상물건의 확인)에 따르면,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실지조사를 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대상물건은 2025년 09월 25일 감정평가에 착수하여 2025년 10월 13일자 현장실사를 통해 실지조사를 실시하였음.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II 감정평가의 관련규정 및 적용방법

### 1. 감정평가의 근거 법령 등

본 감정평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감정평가 관계 법령과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일반이론에 의거하여 평가함.

### 2. 감정평가 관련 규정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개별물건기준 원칙 등]

- ①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 ②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 할 수 있다.
- ③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 할 수 있다.
- ④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 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 할 수 있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 [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 [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감정평가법인등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등 제7조제2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상가건물의 구분소유)

- ① 1동의 건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건물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경우에 그 건물부분(이하 “구분점포”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1. 구분점포의 용도가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의 판매시설 및 같은 항 제8호의 운수시설일 것
  2. 삭제 <2020. 2. 4.>
  3.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4.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를 견고하게 붙일 것
- ② 제1항에 따른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 ①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 ②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 ③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 ①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 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2항 본문의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善意)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④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3. 대상물건에 적용한 주된 방법과 다른 감정평가방법

가. 대상물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으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2항, 제12조 제1항 및 제16조에 따라 인근지역 내 유사한 부동산의 일반적인 거래사례와 위치, 입지조건, 부근상황 및 건물의 구조, 용재, 시공상태, 설비상태, 층별·향별·위치별 효용성 등 제반 가치형성요인을 종합 참작하여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전유부분과 공용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체로 평가하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주된 방법으로 적용하였음.

나. 대상물건의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별로 정한 주된 감정평가방법인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 하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하나, 대상물건은 거래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성이 높은 구분소유 부동산으로서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원가방식, 수익방식)의 적용이 불필요하거나 적용에 한계가 있는 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다른 감정평가방법에 의한 합리성 검토는 생략하였음.

### 4. 일괄·구분·부분감정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이유 및 내용

대상물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 부동산으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에 따라 구분소유권 대상이 되는 건물(전유부분과 공용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5. 그 밖의 사항

가. 본건의 지번, 면적 등은 귀 제시목록에 따라 사정평가 하였으니, 경매 진행 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나. 대상물건의 위치확인은 집합건축물대장상 현황도면 및 현황 점유부분에 의거하였음.

다. 본건은 집합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구분건물로 등재되어 있으며, 현황 벽체로 구분되어 구조 및 이용이 독립된 구분건물임.

라. 명세표에 기재한 토지와 건물의 가격 배분가액은 한국부동산연구원이 제시한 주거용 집합건물 토지·건물 배분비율표에 근거하였음.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III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 1. 감정평가에 참고한 자료

#### 가. 인근지역 거래사례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호	소재지	건물명 및 동 / 층 / 호수	이용상황	거래일자	전유면적 (㎡)	전유면적당 단가(원/㎡)	거래금액 (원)	비고
				사용승인일				
㉠	우암동 111-13 외	평화아파트 2/2/***	아파트	2024-03-23	84.6	1,654,846	140,000,000	-
				1984-12-08				
㉡	우암동 111-13 외	평화아파트 2/3/***	아파트	2024-02-16	84.6	1,536,643	130,000,000	-
				1984-12-08				
㉢	내덕동 60-1	롯데삼성아파트 비/1/***	아파트	2024-12-01	43.92	1,582,422	69,500,000	-
				1986-11-18				

#### 나. 인근지역 감정평가사례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정보화시스템 등]

기호	소재지	건물명 및 동 / 층 / 호수	이용상황	기준시점	전유면적 (㎡)	전유면적당 단가(원/㎡)	감정평가액 (원)	평가 목적
				사용승인일				
①	우암동 111-13 외	평화아파트 1/4/***	아파트	2024-11-22	84.6	1,500,000	127,000,000	법원경매
				1984-12-08				
②	우암동 50-4 외	삼일아파트 바/5/*	아파트	2022-02-08	52.34	1,320,000	69,000,000	법원경매
				1982-09-27				
③	내덕동 106-10	롯데삼성아파트 에이/2/***	아파트	2024-01-19	43.92	1,550,000	68,000,000	법원경매
				1986-11-18				

#### 다. 인근지역 내 유사부동산 거래가격수준

지리적 위치	이용상황	층수	전유면적 기준 가격수준(원/㎡)	비고
본건 단지	아파트	저층	1,600,000원/㎡ ~ 1,700,000원/㎡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 가. 개 요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事情補正),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함.

$$\text{비준가액} = \text{거래사례 가격(원/㎡)} \times \text{사정보정} \times \text{시점수정} \times \text{가치형성요인 비교치}$$

### 나. 비교사례 선정

#### ■ 거래사례 선정 기준

##### 감정평가실무기준 3.3.1.2 [거래사례의 수집 및 선택]

- ① 거래사정이 정상이라고 인정되는 사례나 정상적인 것으로 보정이 가능한 사례
- ② 기준시점으로 시점수정이 가능한 사례
- ③ 대상물건과 위치적 유사성이나 물적 유사성이 있어 지역요인·개별요인 등 가치형성요인의 비교가 가능한 사례

#### ■ 거래사례의 선정 및 그 사유

상기 거래사례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전반적으로 유사하여 비교 가능성이 높은 거래사례를 아래와 같이 선정함.

대상물건	비교사례 선정
일련번호 1-1	거래사례 ㉠

기호	소재지	건물명 및 동 / 층 / 호수	이용상황	거래시점	전유면적 (㎡)	단가 (원/㎡)	거래금액 (원)
				사용승인일			
㉠	우암동 111-13 외	평화아파트 2/2/**	아파트	2024-03-23	84.6	1,654,846	140,000,000
				1984-12-08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다. 사정보정

사정보정이란 가격의 산정에 있어서 수집된 거래사례에 거래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되어 있거나 거래당사자가 시장사정에 정통하지 못하여 적정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된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가격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의미하며, 상기 선정된 사례는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아니함.(1.000)

## 라. 시점수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의 지가변동률, 한국은행에서 조사·발표한 부동산지수(생산자물가지수)는 전국단위의 가격지수로서, 가격변동추이를 적절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운 바, 한국부동산원이 조사·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의 유형별 매매가격지수'를 적용하여 시점수정치를 산정하였음.

### ■ 매매가격지수

[출처: 한국부동산원]

대상물건	비교사례	지역	유형	거래시점(사례)	매매가격지수 적용치
				기준시점(대상)	
1-1	㉠	충북 청원구	아파트	2024년 02월	100.9
				2025년 08월	99.9

- 산정방법 : 기준시점(또는 거래시점)의 각 직전달의 매매가격지수를 비교하여 산정함. 다만, 기준시점(또는 거래시점)이 2021년 06월 이전인 경우 그 달의 15일이 포함된 주의 월요일 이후이고, 감정평가시점 당시에 기준시점(또는 거래시점)이 속하는 달의 매매가격지수가 조사·발표된 경우에는 기준시점이 속하는 달의 지수로 비교하여 산정함.

### ■ 시점수정치 결정

대상물건	비교사례	지역 (산정기간)	계산식	시점수정치
1-1	㉠	충북 청원구(아파트) (2024-03-23 ~ 2025-10-13)	$99.9/100.9 \approx 0.99009$	0.99009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마. 가치형성요인 비교치 결정

■ 일련번호 1-1 / 비교사례 ㉠

조 건	세 부 항 목 (주거용)	비 교 치		검 토 의 견
		비교사례	대상물건	
단지 외부요인	대중교통의 편의성(지하철, 버스정류장)	1.00	1.00	대체로 유사함.
	교육시설 등의 배치			
	도심지 및 상업·업무시설과의 접근성			
	차량이용의 편리성(가로폭, 구조 등)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 등의 배치			
	자연환경(조망 풍·치·경관 등)			
단지 내부요인	시공업체의 브랜드	1.00	1.00	대체로 유사함.
	단지내 총 세대수 및 최고층수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단지내 면적구성(대형·중형·소형)			
	단지내 통로구조(복도식/계단식)			
호별 요인	층별 효용	1.00	1.00	대체로 유사함.
	향별 효용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권의 크기			
	내부 평면방식(베이)			
	간선도로 및 철도 등에 의한 소음			
기타 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0	1.00	대체로 유사함.
<b>가치형성요인 비교치</b>		<b>1.000</b>		

### 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일련 번호	비교 사례	사례단가 (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치	산정단가 (원/㎡)	전유면적 (㎡)	산정가액 (원)	시산가액 (원)
1-1	㉠	1,654,846	1.000	0.99009	1.000	1,638,446	84.6	138,612,532	139,000,000
<b>합 계</b>							-	-	<b>139,000,000</b>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IV 감정평가액 결정 의견

### 1. 주된 평가방법에 의해 산정된 시산가액의 검토

대상물건은 거래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성이 높은 구분소유 부동산으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다른 감정평가방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주된 평가방법 외에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필요하거나 적용에 한계가 있음.

본 평가는 전술된 '감정평가액의 결정에 관한 참고자료(인근 유사부동산의 거래사례, 감정평가사례, 경매시장 추이 등)'를 종합 고려할 때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출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음.

### 2. 감정평가액 결정

일련 번호	소재지	건물명·동명	층	호	전유면적 (㎡)	산정단가 (원/㎡)	감정평가액 (원)
1-1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111-13 외	평화아파트·1	2	209	84.6	1,638,446	139,000,000
합 계				1세대	-	-	139,000,000

## 아파트 감정평가 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등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b>1. 위치 및 주위환경</b>	대상물건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소재 우암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 (평화아파트 제1동 제2층 제209호)로서, 인근은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주상복합 지대임.
<b>2. 교통상황</b>	대상물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임.
<b>3. 건물의 구조</b>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건물 내 제2층 제209호로, 외벽: 페인팅 등 마감, 내벽: 벽지도배 등 마감, 바닥: 장판지갈기, 타일갈기 등 마감, 창호: 샷시 창호임.
<b>4. 이용상태</b>	아파트로 이용중임.
<b>5. 설비내역</b>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b>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b>	2필 일단의 부정형 평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b>7. 인접 도로상태등</b>	본건 북측과 우암동 111-13번지와 111-18번지 사이에 소재하는 폭 5M 내외의 포장도로로 접근이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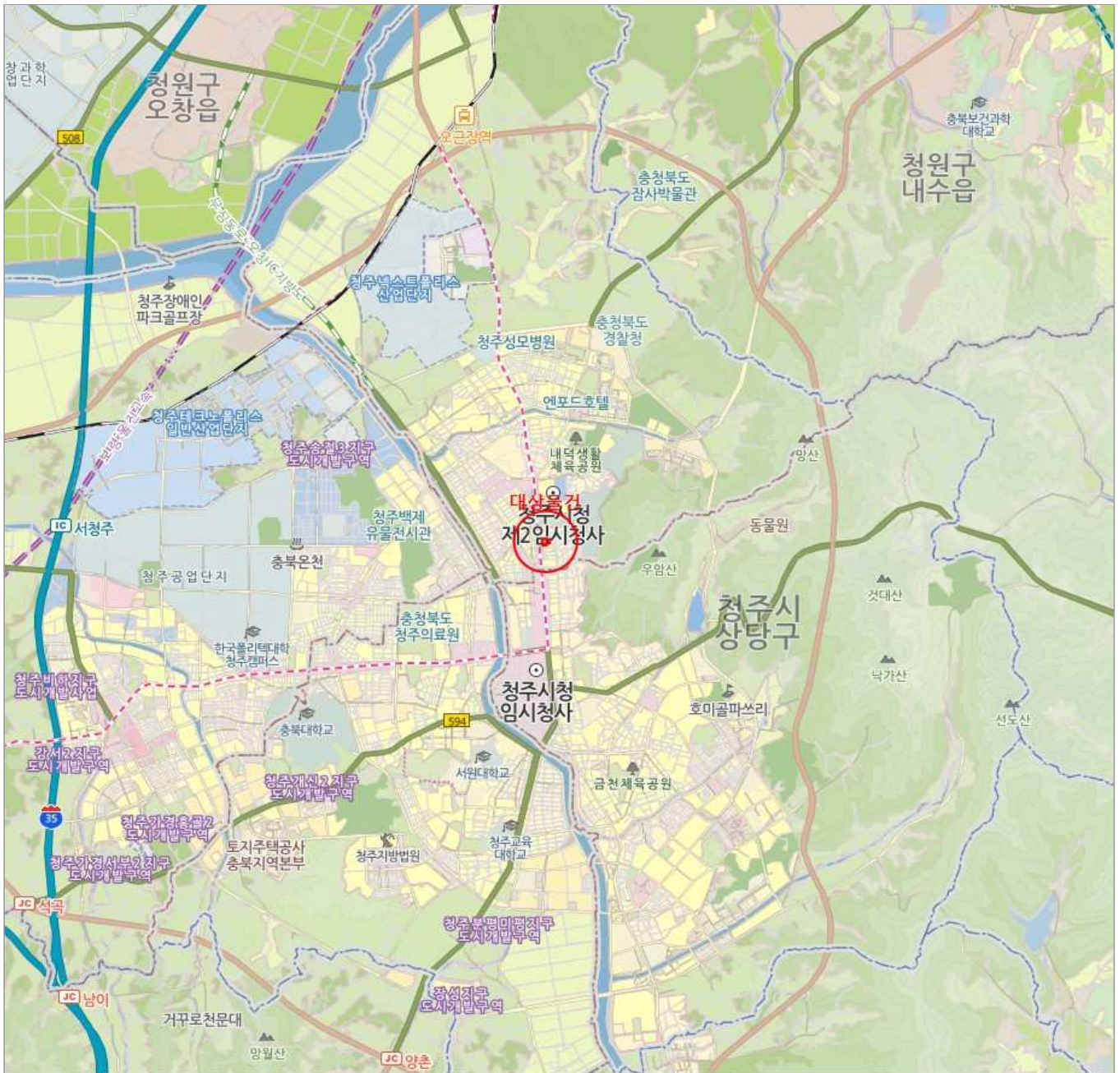
## 아파트 감정평가 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등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p>일련번호 1: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건축한계선 3M(도로폭 15m이상 주된 도로변에 한함),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중로1류(폭 20m~25m)(저축),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lt;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gt;, 상대보호구역(우암초등학교, 청주교육지원청 체육건강과(043-299-3191~3196))&lt;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gt;, 상대보호구역(청주대학교, 청주교육지원청체육건강과(043-299-3191~3196))&lt;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gt;, 중점경관관리구역(연락처: 청주시청 건축디자인과 043-201-2552)</p> <p>일련번호 2: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lt;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gt;, 상대보호구역(우암초등학교, 청주교육지원청 체육건강과(043-299-3191~3196))&lt;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gt;, 상대보호구역(청주대학교, 청주교육지원청체육건강과(043-299-3191~3196))&lt;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gt;, 중점경관관리구역(연락처: 청주시청 건축디자인과 043-201-2552)</p>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 광역위치도

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111-13 외 평화아파트 제1동 제2층 제209호



# 건 물 개 황 도



호별배치도

201	202	203	205	206	207	208	209	210	211
-----	-----	-----	-----	-----	-----	-----	-----	-----	-----

[ 1-1) 평화아파트 제1동 제2층 제209호 ]

## 사 진 용 지



본건 단지 전경



본건 건물 전경

## 사 진 용 지



본건 현관 입구



본건 전경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Mirae & Saehan Appraisal Co.,LTD

수 신 청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박상규

참 조 경매6계

제 목 감 정 평 가 회 보

1. 우리 (주)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의 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 법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문서 2025. 09. 24자 귀 제『2025타경4896』호로 의뢰하신 『박노식 소유물건(2025타경4896)』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를 별첨과 같이 회보합니다.

3. 우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항(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에 따라2010년 1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오니 필요사항을 하단에 기재된 회계팀 팩스나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필요사항 : 사업자등록증사본, 담당자성명, 유무선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별 첨 :
- 1. 감 정 평 가 서 1부
  - 2. 수 수 료 청 구 서 1부
  - 3. 영 수 증 1부 끝.

(주)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충북지사장



담 당 자 감정평가사 하영호

시행일자 미래새한 2509-42-25001호 (2025.10.13)

우)28378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56 (강서동,강서밀레니엄타워)  
전화 (043)234-4488 FAX (043)234-4600 http://www.msapp.co.kr  
E-mail : mrsh19@kapaland.co.kr





문서확인번호: 1758-7637-7602-9070



발급번호 : 2025431140167584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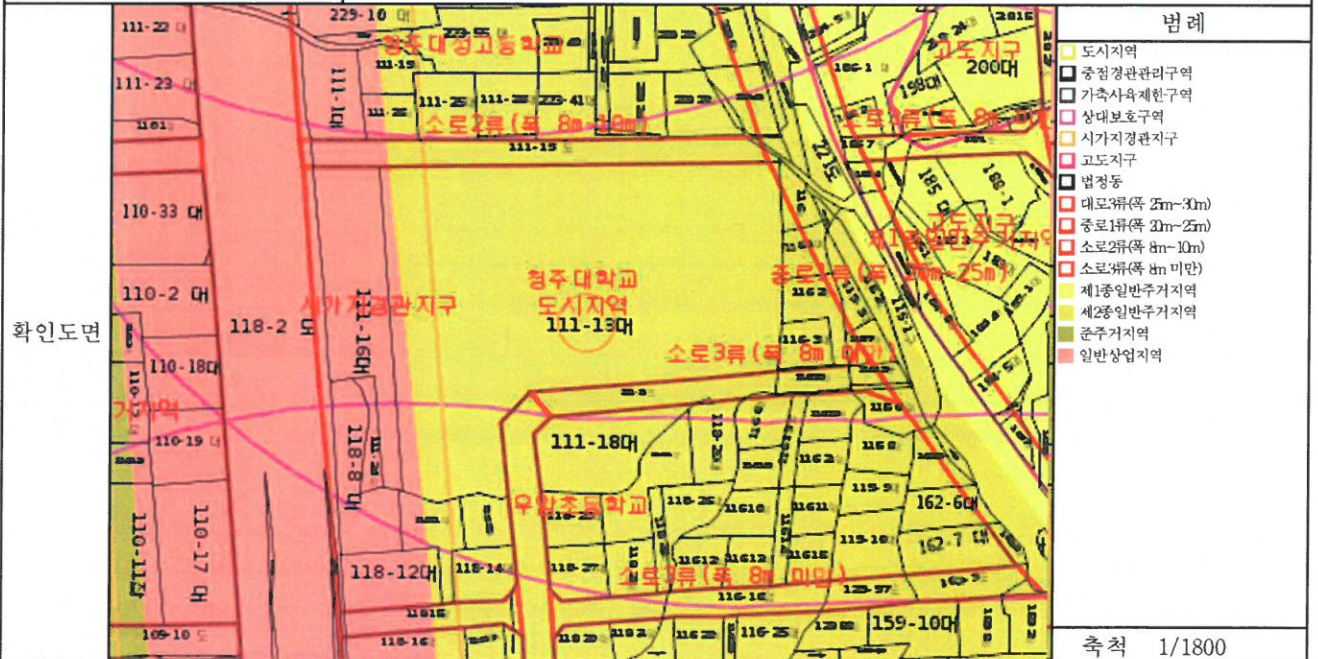
발행매수 : 1/2

발급일 : 2025/ 09/ 25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처리기간  
1 일

신청인	성명	황주연	주소			
			전화번호	010-9488-2840		
신청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111-13	대	6,078.0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건축한계선 3M(도로폭 15m 이상 주된 도로변에 한함)),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중로1류(폭 20m-25m)(저축) [이하공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우암 초등학교, 청주교육지원청 체육건강과(043-299-3191-319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청주대학교, 청주교육지원청 체육건강과(043-299-3191-319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공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중점경관관리구역(연락처: 청주시청 건축디자인과 043-201-2552) [이하공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신청토지에 대한 현재의 토지이용계획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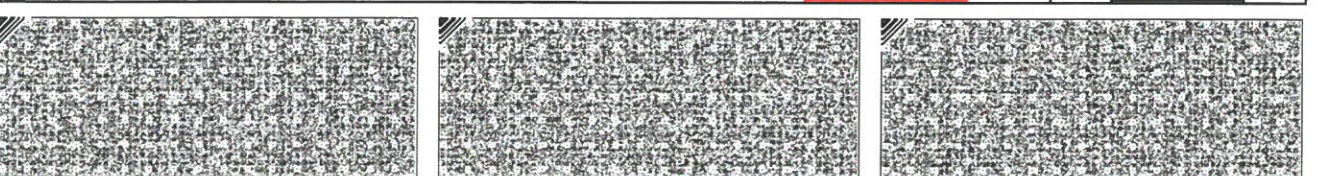
2025/ 09/ 25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청주시청인민원사무전용

수입증지 불이는곳

수수료  
전자결제  
민원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정부24(gov.kr)의 인터넷발급문서진위확인 메뉴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하단의 바코드로도 진위확인(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서확인번호: 1758-7648-3336-6573



발급번호 : 2025431140167586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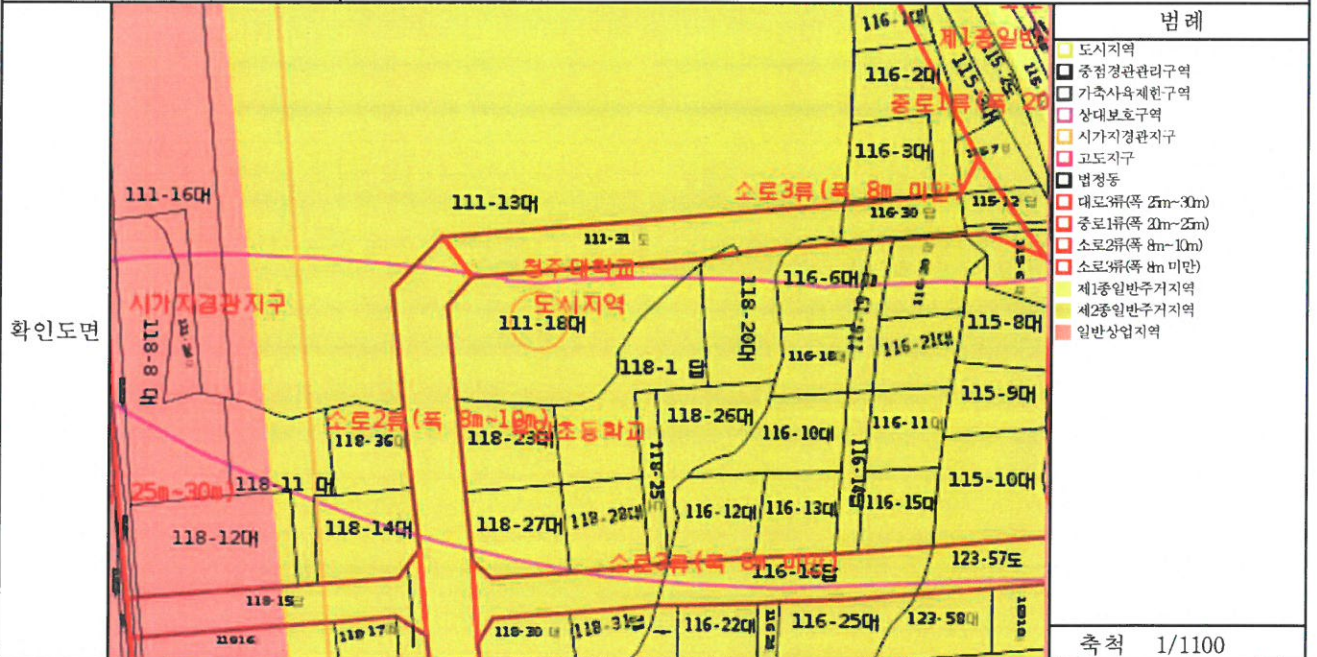
발행매수 : 1/2

발급일 : 2025/ 09/ 25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처리기간  
1 일

신청인	성명	나성우	주소	
			전화번호	
신청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111-18	대
				면적(m <sup>2</sup> )
				562.0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이하공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우암 초등학교, 청주교육지원청 체육건강과(043-299-3191-319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청주대학교, 청주교육지원청 체육건강과(043-299-3191-319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공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중점경관관리구역(연락처: 청주시청 건축디자인과 043-201-2552) [이하공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신청토지에 대한 현재의 토지이용계획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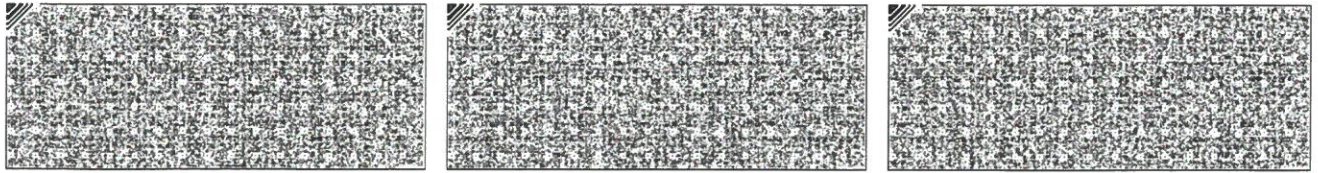
2025/ 09/ 25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청주시청장인**  
민원사무전용

수입증지 붙이는 곳

수수료  
전자결제  
민원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정부24(gov.kr)의 인터넷발급문서진위확인 메뉴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하단의 바코드로도 진위확인(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3. 8. 1>

###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갑)

(2쪽 중 제1쪽)

건물ID	2020042510000763	고유번호	4311410100-3-01110013	건축물 명칭	평화 아파트	특이사항	
대지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지번	111-13	도로명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244번길 6 (우암동)
대지면적	0 m <sup>2</sup>	연면적	12,286.8 m <sup>2</sup>	지역	지구	지구	구역
건축면적	2,149.74 m <sup>2</sup>	용적률	10,267.74 m <sup>2</sup>	건축물 수	3	주용도	아파트
건폐율	0%	용적률	0%	층 호수/기구수/세대수	3	주주자 대 수	6동
조정면적	m <sup>2</sup>	공개 공지/공간 면적	m <sup>2</sup>	0호/071구/110세대	m <sup>2</sup>	건축선 후퇴거리	120.24m

#### 건축물 현황

구분	명칭	도로명주소	건축물 구조조	건축물 지붕	층수	용도	연면적(m <sup>2</sup> )	변동일	변동원인
주1	평화 아파트 1동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244번길 6 (우암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	1/5	아파트	5,525.46	2011.10.6.	표시변경(직권)
주2	평화 아파트 2동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244번길 6 (우암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	1/5	아파트	5,525.46	2011.10.6.	표시변경(직권)
주3	평화 아파트 3동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244번길 6 (우암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	1/5	아파트	1,115.64	2011.10.6.	표시변경(직권)
부1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244번길 6 (우암동)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0/1	공중변소	7.68	2011.4.14.	표시변경(직권)

이 등(초)본은 건축물대장의 원본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청장



담당자: 전 화:

발급일 : 2025년 9월 25일

297mm×210mm(백상지(80g/㎡))



■ 건축물대장의 기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서식)

(2쪽 중 제2쪽)

대지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명칭	평화 아파트	특이사항
지번	지번 관련 주소			도로명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244번길 6(우암동)	
111-13				도로명주소관련 주소		

구분	성명 또는 명칭	면허(등록)번호	*주거장				승강기		허가일	인허가 시기			
			구분	층내	층외	인근	면적	승용			비상용		
건축주	**	**	구분	층내	층외	인근	면적	승용	대	비상용	대	허가일	**
설계자	**	**	자주식	대	대	대	대	※하수처리시설	※금수설비(저수조)	※구분	※수량 및 총용량	작공일	**
공사감리자	**	**	기계식	대	대	대	대	형식	지상	개	개	**	**
공사시공자 (원장관리인)	**	**	전기차	대	대	대	대	용량	지하	개	개	사용승인일	**

인증명	유효기간	성능	건축물 구조 현황		내진능력	내진능력	내진능력	종류
			내진설계 적용 여부	비적용				
*건축물 인증 현황			내진설계 적용 여부	비적용	내진능력	내진능력	내진능력	종류
			특수구조 건축물	지하수위	GL	m	건축물 관리점검 현황	점검유효기간
			구조형식: [ ] 지내력기초 [ ] 파일기초	미해당	구조설계해석법: [ ] 등가정적해석법 [ ] 동적해석법			

변동사항		변동내용 및 원인		변동내용 및 원인		그 밖의 기재사항	
변동일	변동내용 및 원인	변동일	변동내용 및 원인	변동일	변동내용 및 원인	변동일	변동내용 및 원인
2011.10.6.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에 의거 (총괄표제부(건축면적: '0' -> '2149.74', 부속건축물 수: '2' -> '6', 세대수: '0' -> '110', 용적률 산정용 면적: '0' -> '110			267.74)) 직권변경	- 이하여백 -		

\*\* 표시 항목은 동별 내용이 같은 경우에만 적고, 동별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일반건축물대장(간) 및 집합건축물(표제부, 간)에 적습니다.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3. 8. 1.)

###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을) 건축물현황

(1쪽 중 제1쪽)

건물ID	2020042510000763	고유번호	4311410100-3-01110013	명칭	평화 아파트	특이사항
대지역적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지번	111-13	도로명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244번길 6 (우암동)	

#### 건축물현황

구분	건축물명칭(번호)	도로명주소	건축물 구조	건축물 지능	층수	용도	연면적(㎡)	변동일자	변동원인
부2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244번길 6 (우암동)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0/1	기계실	32.4	2011.4.14.	표시변경(직권)
부3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244번길 6 (우암동)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0/1	공중변소	7.68	2011.4.14.	표시변경(직권)
부4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244번길 6 (우암동)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0/1	기계실	32.4	2011.4.14.	표시변경(직권)
부5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244번길 6 (우암동)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0/1	기계실	32.4	2011.4.14.	표시변경(직권)
부6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244번길 6 (우암동)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0/1	공중변소	7.68	2011.4.14.	표시변경(직권)
				- 이하여백 -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8. 1 >

###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갑)

(2쪽 중 1쪽)

건물ID	2120042510010504	고유번호	4311410100-3-01110013	명칭	평화 아파트 1동	호수/기구수/세대수	0호/07기구/50세대
대지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지번	111-13외 1필지	도로명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244번길 6 (우암동)	
※대지면적	0 m <sup>2</sup>	연면적	5,565.54 m <sup>2</sup>	※지역	※지구	※구역	
건축면적	962.58 m <sup>2</sup>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4,652.58 m <sup>2</sup>	주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용도	아파트
※건폐율	0 %	※용적률	0 %	높이	m	기층	슬라브
※조건면적	m <sup>2</sup>	※공개 공지/공간 면적		※건축선 후퇴면적	m	※건축선 후퇴거리	
				m			

건축물 현황				건축물 현황					
구분	종별	구조	용도	면적(m <sup>2</sup> )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m <sup>2</sup> )
주1	지1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912.96	주1	4층	철근콘크리트조	아파트	922.5
주1	1층	철근콘크리트조	아파트	922.5	주1	5층	철근콘크리트조	아파트	922.5
주1	2층	철근콘크리트조	아파트	922.5	부1	1층	철근콘크리트/스라브	공중변소	7.68
주1	3층	철근콘크리트조	아파트	922.5	부2	1층	철근콘크리트/스라브	기계실	32.4

이 등(초)본은 건축물대장의 원본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발급일: 2025년 9월 25일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청장



담당자: 전 화:

\* 표시 항목은 출력표제부가 있는 경우에는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297mm×210mm [백상지 80g/㎡]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2쪽 중 제2쪽)

대지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명칭	평화아파트 1동	호수/기구수/세대수	0호/07기구/50세대
지번	지번 관련 주소 111-18	도로명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244번길 6(우암동)	도로명주소 관련 주소		
111-13외 1필지							

구분	성명 또는 명칭	면허(등록)번호	*주차장					승강기		인허가 시기			
			구분	우내	우외	인근	면적	승용	대		비상용	대	
건축주			구분	우내	우외	인근	면적	승용	대 <td>비상용</td> <td>대 <td>허기일</td> <td>1984.5.1.</td> </td>	비상용	대 <td>허기일</td> <td>1984.5.1.</td>	허기일	1984.5.1.
설계자			자주식	대	대	대	대	*하수처리시설	대	*금수설비(저수조)	대	작공일	
공사감리자			기계식	대	대	대	대	형식	구분	수량 및 총용량	개	사용승인일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전기차	대	대	대	대	용량	지하	개	개	1984.12.8.	

*건축물 인증 현황		건축물 구조 현황		내진설계 적용 여부		내진능력		건축물 관리 현황	
인증명	유효기간	성능	비적용	내진설계 적용 여부	내진능력	내진능력	관리계획 수립 여부	인증명	유효기간
			특수구조 건축물		미해당	지하수위	건축물 관리점검 현황		
			기초형식 [ ] 지내력기초 [ ] 파일기초		구조설계해석법: [ ] 등가정적해석법 [ ] 동적해석법	GL	종류	점검유형기간	
							점검점	2024.11.17~2027.10.27.	

변동사항		변동내용 및 원인		그 밖의 기재사항	
변동일	변동내용 및 원인	변동일	변동내용 및 원인	지하	상
2011.10.6.	건축물대장 기초치로 경비에 의거 (표제부(건축면적:0' -> 962.58,용적률 산정용 연면적:0' -> 4652.5 8)) 직권변경	2014.7.18.	법률에 의거 관할 행정구역 변경 정기점검(점검기간: 2014.07.19 까지 보고일: 2014.07.18)	지하	912.96㎡내 내관리실25.2㎡ -이하여백-
2014.7.1.	법률 제 11624호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2018.11.7.	정기점검(점검기간: 2018.07.19까지, 보고일: 2018.07.19)		

\* 표시 항목은 총괄표제부가 있는 경우에는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개정 2023. 8. 1 >

###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을) 변동사항

(1쪽 중 1쪽)

건물ID	2120042510010504	고유번호	4311410100-3-01110013	명칭	평화아파트 1동	호수/가구수/세대수	0호/07가구/50세대
대지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지번	111-13 외 1필지	도로명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244번길 6 (우암동)	

#### 변동사항

변동일	변동내용 및 원인	변동일	변동내용 및 원인
2022.7.22.	18.08.19) 정기점검(점검기간 : 2021.12.29 까지, 보고일 : 2022.07.20)		
2025.5.9.	정기점검(점검기간 : 2024.11.17 까지, 보고일 : 2024.11.28) - 이하야백 -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 8. 1.)

###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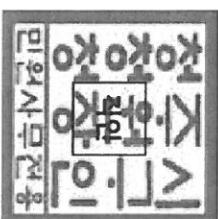
(2쪽 중 제1쪽)

건물ID	2220042510002205	고유번호	4311410100-3-01110013	명칭	평화아파트 1동	호명칭	209호
대지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지번	111-13 외 1필지	도로명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244번길 6 (우암동)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성명(명칭)		주소	소유권 지분	변동일자
					주민(별이)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빈노식			
주	2층	철근콘크리트조	아파트	84.6	620315-1-*****	빈노식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244번 길 6, 1동 209호 (우암동, 평화아파트)		2012.8.17.
					공용부분		-이하야백-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 이 건축물대장은 현소유자만 표시한 것입니다.				
주		철근콘크리트조		25.99					
		-이하야백-							

이 등(조)본은 건축물대장의 원본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청장



담당자:  
전화:

발급일자: 2025년 9월 25일

\* 경계선이 없는 구분점포의 경우에는 전유부분 구조란에 경계선이 없음을 기재합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



건물ID	2220042510002205	고유번호	4311410100-3-01110013	명칭	평화 아파트 1동	호명칭	209호
대지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지번	111-13 외 1필지	도로명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244번길 6 (우암동)

공용부분				공동주택(아파트) 가격 (단위 : 원)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기준일	공동주택(아파트) 가격	
					2025.1.1.	75,300,000	
					2024.1.1.	73,300,000	
					2023.1.1.	72,700,000	
					2022.1.1.	81,500,000	
					2021.1.1.	82,600,000	
					2020.1.1.	78,900,000	
					2019.1.1.	79,000,000	
					2018.1.1.	95,000,000	
					2017.1.1.	92,000,000	
					2016.1.1.	90,000,000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만 표시됩니다.

**변동사항**

변동일	변동내용 및 원인	변동일	변동내용 및 원인	그 밖의 기재사항
2014.7.1.	법률 제 11624호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할 행정구역 변경 - 이하여백 -			관련지번 111-18 - 이하여백 -

297mm×210mm(백상지 (80g/㎡))

